

수원지방법원 2024. 5. 29 선고 2021가합14147 판결 [구상금 등 반환 청구]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동현

피고B 주식회사

변론 종결2024. 5. 1.

판결 선고2024. 5. 29.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62,221,0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6. 10. 14. 설립된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C은 피고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6년경 C이 사내이사로 있던 A 주식회사(소재지: 서울 구로구 D건물, E, F호, 이하 '서울 A'이라 한다)¹⁾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하고,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른 동업체를 '이 사건 동업체'라고 한다).

업무협약서

1. 각 사업별 업무범위

C 대표의 업무 범위 1) 임대영업 및 허가증 교부, 2) 개발 행위 부분, 3) 은행 PF 및 REC 계약

G 대표의 업무 범위 1) 각 현장별 합의된 전체 공사 진행을 맡는다.

2. 각 사업별 임대 및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서로간 합의된 금액을 투입하고 관련된 기성 및 은행 대출 발생시 기 투입된 자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한다.

4. 각 사업의 개발행위 허가 승인을 전제로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사업권 매각과 관련된 비용 중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원고가 서울 A의 법인계좌로 송금한다.

6.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 불가, 기타 조건 등으로 사업이 불가할 경우 불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본 계약용량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사업용량을 제공 또는 투자비용을 15일 이내에 반환한다는 내용 중 사업주가 선택한 결정 사항에 따른다.

7. "6항"에서 투자비용을 반환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울 A은 원고가 서울 A에게 지급한 사업권 매각과 관련된 비용을 원고의 법인계좌로 송금한다.

8. "6항, 7항"에 따라 사업이 불가하면 사업진행에 투입된 자금을 원고와 서울 A이 각 50%씩 부담한다.

9. 사업별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준공 및 정산 후 발생하는 이익금은 G 대표와 C 대표 각 법인에 50%씩 지급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변제자대위에 따른 출자금 지급청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서울 A은 이 사건 업무협약에서 각 1/2씩 출자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서울 A을 대신하여 이 사건 동업체에 162,221,062원의 출자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동업체는 원고의 서울 A에 대한 출자금 지급청구권 대위행사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 피고는 서울 A의 이 사건 업무협약 상 계약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동업체의 출자금 지급청구권을 변제자대위한다.

2) 판단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업무협약에서 각 1/2씩 출자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업무협약을 위하여 지급한 돈 중 1/2은 서울 A이 지급하기로 한 출자금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라거나, 피고가 서울 A의 이 사건 업무협약 상 계약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서울 A을 대신하여 이 사건 동업체에 162,221,062원의 출자금을 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서울 A은 162,221,062원의 출자금 지급의무를 면하였으며, 피고는 서울 A의 이 사건 업무협약상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162,221,062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2,221,062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162,221,062원을 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출자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현호

판사김리사

판사김선호

1) 원고는 2024. 4. 17.자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에서 서울 A과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